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97회 제1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집행부발의】

검 토 보 고 서



2023. 6.

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3. 6. .

경 제 도 시 위 원 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경제지원과장)
- 제출일자: 2023. 5. 26.
- 회부일자: 2023. 5. 26.
- 검토기간: 2023. 5. 26. ~ 5. 30.(5일간)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
 - 상위법령상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례규정 삭제

3. 주요내용

-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5조제3항)
 - “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” 를 “법 제7조의5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로 한다.
-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.

4. 참고사항

- 개정조례안: 붙임
- 관계법령
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7조의5
 -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 및 제4조의3
- 입법예고(2023. 4. 11. ~ 2023. 5. 1.)결과: 의견없음
- 행정규제 심사결과: 해당없음
-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조례·규칙 심의결과: 원안 가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·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·보완하려는 사항임.
-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 - 안 제5조 계획의 수립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,
 - 제7조 및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·운영과 기능은 상위법인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음.
-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,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삭제처리 하였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,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>

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”를 “법 제7조의5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계획의 수립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<u>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</u>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.</p> <p><u>제7조(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의 구성·운영)</u> ① 구청장은 <u>대형유통기업, 중소유통기업,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간의 상생발전</u>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<u>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</u>를 구성·운영한다.</p> <p>② 협의회는 <u>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u></p> <p>④ <u>협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u></p> <p>1. <u>구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</u></p> <p>2. <u>구 지역 내 전통시장, 슈퍼마켓,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</u></p>	<p>제5조(계획의 수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 <u>법 제7조의5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</u>-----.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가. 삭제

나. 구 지역 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

다. 구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라. 그 밖에 대·중소유통 협력업체·납품업체·농업인 등 이해관계자

마. 그 밖에 달서구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4. 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

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.

⑥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, 기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제8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.

1.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

2.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

<삭 제>

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
등의 개최

3.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
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

4.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
는 포상추천, 정부에 대한 건의 등

5. 제9조에 따른 전통산업보존구역
의 지정·변경 및 취소

6.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를
요청하는 사항

7. 대·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
공동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
사항

8. 그 밖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
장과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
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【관 계 법 령】

□ 「유통산업발전법」

제7조의5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)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(이하 “대규모점포등”이라 한다)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

제4조의2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)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회장은 부시장(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)·부군수·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특별자치시장·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
1.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
2.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, 슈퍼마켓, 상가 등 중소기업의 대표 3명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가.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
 - 나.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- 다. 그 밖에 대·중소유통 협력업체·납품업체·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

4. 해당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제1호·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4. 직무태만,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제4조의3(협의회회의 운영 등)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·시간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협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④ 협의회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.

⑤ 협의회회의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1.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
1의2.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

2.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

3.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대·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, 공동조사연구, 지역유통 산업발전,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